

## 1. 개정이유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가 부실하다고 평가할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339호, 2020.1.7. 공포, 2020.4.8. 시행)됨에 따라 부실의 정도에 따라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는 세부기준을 정하고, 보수·보강 조치 등의 세부사항에 중대한 결함 외에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을 적용하는 한편

기존에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하여 기술심의를 거친 결과는 부실 여부를 평가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를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의무 보수·보강 조치 대상 등에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 포함 (안 제8조, 제9조)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결함 외에 사용자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에 대하여도 보수·보강 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일반사항, 수행방법 등의 세부사항에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을 포함토록 정비

나. 제1·2종시설물의 성능평가 및 제3종시설물 범위의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비용의 산정기준 추가(안 제55조, 별표 22)

1) 제1종·2종시설물의 성능평가에 대한 비용의 산정 기준 신설

2) 기존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비용의 산정 기준에 교량, 터널 및 건축물의

제3종시설물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의 산정 기준 추가

다.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확대(안 제63조)

부실점검 방지를 위해 점검·진단의 부실 여부를 평가하는 대상에서 기술심의 및 기술자문을 거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제외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

라. 부실점검의 세분화기준 규정 및 평가기준에 과락제도 추가(안 제76조)

1) 부실점검이 그 정도에 따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됨에 따라 이를 구분하는 세부기준을 정비

2) 점검·진단 결과의 중요항목이 일정 기준 이하로 평가된 경우 부실로 구분하는 과락제도 도입

마. 교육기관의 교육훈련계획에 대한 시정 명령 근거 마련(안 제87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이 제출한 교육훈련계획을 검토하여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바.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실태조사 매뉴얼을 따르도록 규정(안 제100조)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하는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을 따름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 · 구조문대비표, 별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 시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3조”를 “제37조, 제43조, 제44조”로, “제18조에”를 “제18조, 제32조에”로, “정밀안전진단의”를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로, “성능평가의 실시방법·절차, 기술자”를 “기술자”로 한다.

제2조제10호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를”을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안전점검등”을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결과”를 “실시결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안전점검등의”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안전점검등”을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로 한다.

제8조제9항 중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을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및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이하 “중대한결함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표 5와 같고,”를 “중대한결함등의”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중대한 결함”을 각각 “중대한결함등”으로 한다.

제11조 중 “관계행정기관”을 “관계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점검등”을 각각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참여기술자는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3조제2항 전단 중 “제4항 및 제5항”을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상태안전성능”,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점검등””을 ““상태안전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 15”를 “영 별표 14”로, “안전성능 등급”을 “안전성능등급”으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별표 15”를 “영 별표 14”로, “내구성능 등급”을 “내구성능등급”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별표 15”를 “영 별표 14”로, “사용성능 등급”을 “사용성능등급”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별표 16”을 “영 별표 14”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성능 등급과 함께 종합등급”을 “사용성능등급과 함께 종합성능등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종합등급”을 “종합성능등급”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전단 중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전단 중 “중대한 결함”을 “중대한결함등”으로, “제8항”을 “제10항”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중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을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안전점검등”을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로, “제3장”을 “제3장 및 제4장”으로, “기본과업의 직접인건비”를 “기본과업비(직접인건비)로, “직접경비와 선택과업비”를 “직접경비)와 선택과업비(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점검등”을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점검등”을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점검 및 진단업무”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업무”로 한다.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점검 및 진단업무”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업무”로, “점검 및 진단요원”을 “기술자”로 한다.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경비 및 기술료 등은”을 “제경비, 기술료 및 직접경비는”으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평가의 대상) 법 제18조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시설물에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 규칙 제19조에서 정한 중대한결함 등 또는 손괴가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2단계 이상 상향되거나 하향된 경우

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D, E등급에서 상향된 경우

마.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부적정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

서 같다)으로 통보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한국시설 안전공단·관리주체(이하 “점검·진단실시자”라 한다)가 실시한 정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부적정으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향후 1년간에 한정하며, 실시시기는 용역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시설물의 주요부재에 대한 결함·손상이 발생되었거나 노후 또는 관리 소홀로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인 경우

나. 완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C등급인 경우

3. 민간관리주체를 지도·감독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부실 점검·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4. 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의 100분의 70미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관리주체,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가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부실 점검·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3종시설물에 대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제64조제1항 본문 중 “정밀안전진단결과”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로, “해당분야”를 “해당 직무분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정밀안전진단결과에”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 특급기술자

2명이 평가를 하도록”을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는 자 (이하 “평가자”라 한다)를 2명 이상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평가업무”를 “평가자는 평가업무”로, “현장조사를”을 “현장에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는지를 확인(이하 “사실관계조사”라 한다)을”로, “현장조사를”을 “사실관계조사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 시”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가”를 “제5항에 따라 평가”로 한다.

⑤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은 각각 다음 각 호에 따르며,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따른다.

#### 1. 정밀안전점검 평가항목 및 배점

가. 점검계획수립 및 보고서체계의 적정성 : 5점

나. 자료조사·분석의 적정성 : 10점

다.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 20점

라. 현장 비파괴시험, 재료시험 등 각종 시험·분석의 적정성 : 15점

마. 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추정의 적정성 : 15점

바. 평가결과의 적정성 : 20점

사. 종합결론의 적정성 : 15점

#### 2. 정밀안전진단 평가항목 및 배점

가. 진단계획수립 및 보고서체계의 적정성 : 5점

나. 자료조사·분석의 적정성 : 10점



다.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 15점

라. 현장 비파괴시험, 재료시험 등 각종 시험·분석의 적정성 : 10점

마. 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 15점

바. 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추정의 적정성 : 10점

사. 평가결과의 적정성 : 15점

아. 보수·보강 방법의 적정성 : 10점

자. 종합결론의 적정성 : 10점

⑥ 제5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점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상으로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점수의 총점이 60점 미만이거나 평가항목 중 제5항제1호다목 또는 바목(이하 “정밀안전점검 중요평가항목”이라 한다)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100분의 40이하인 경우

2.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점수의 총점이 70점 미만이거나 평가항목 중 제5항제2호다목, 마목 또는 사목(이하 “정밀안전진단 중요평가항목”이라 한다)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100분의 40이하인 경우

제66조 중 “정밀안전진단결과”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로 한다.

제67조를 삭제한다.

제68조제1항 중 “점검·진단실시자”를 “점검·진단실시자(공동으로 도급 받아 수행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도급 받은 자 모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참석안내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점검·진단실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제69조제1항 중 “정밀안전진단결과”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정밀안전진단결”을 “정밀안전진단 실시결”로 한다.  
제7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이 임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은 제3항제2호”를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은 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제73조제4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소위원장은 소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한다.

제74조제2항 및 제4항 중 “현장조사”를 각각 “사실관계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정밀안전진단결과”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로 한다.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중 “평가심의”를 “평가위원회의 심의”로, ““평가위원””을 ““심의위원””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평가위원들”을 “심의위원들”로, “정밀안전진단결과”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평가위원”을 “심의위원”으로 한다.

①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심의할 경우에는 심의항목 및 배점은 제64조제5항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을, 중요심의항목은 제64조제6항의 중요평가항목을 준용한다.

제76조제1항 본문 중 “평가위원”을 “심의위원”으로, “평가위원 과반수”를 “심의위원 과반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5조제3항”을 “제75조제4항”으로, “평가위원”을 “심의위원”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밀안전진단결과”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로, “시정 또는 부실”을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평가결과에서 심의점수가 70점(정밀안전점검 결과는 60점) 이상인”을 “심의결과에서 심의점수의 총점이 70점(정밀안전점검 심의결과는 60점) 이상이고,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없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정”을 “미흡”으로, “정밀안전진단결과”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로, “심의점수가 60점~69점(정밀안전점검결과는 50~59점)”을 “심의결과에서 심의점수의 총점이 65점~69점(정밀안전점검 심의결과는 55~59점)이거나,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1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부실”을 “불량”으로, “정밀안전진단결과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로, “있다고”를 “있어 실시결과가 일부 불량하다고”로, “심의점수가 60점(정밀안전점검결과는 50점)미만”을 “심의결과에서 심의점수 총점이 60점~64점(정밀안전점검 심의결과는 50점~54점)이거나,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배점의 100분의 40이하인 항목이 2개”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매우 불량 : 당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고의 또는 과실 등이 있어 실시결과가 전반적으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의결과에서 심의점수 총점이 60점(정밀안전점검 심의결과는 50점) 미만이거나,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3개 이상인 경우

③ 평가위원회가 제2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의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지적내용(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6조제4항 중 “제63조제2항”을 “제69조제2항”으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으로, “해당시설물”을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해당시설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공동으로 도급 받아 수행한 점검·진단기관에게는 각각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8조제6항 중 “제74조부터 내지”를 “제74조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평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을 “심의에 참석한 심의위원”으로, “위원 제외”를 “심의위원 제외”로 한다.

제79조 전단 중 “평가위원”을 “심의위원”으로, “정밀안전진단결과”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로 한다.

제80조제2항 중 “현장조사”를 “사실관계조사”로 한다.

제81조 중 “정밀안전진단결과”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정밀안전진단결과가 “부실””을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가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대하여는”을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밀안전점검결과가 “부실””을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가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대하여는”을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통보받은 관리주체 및 점검·진단기관은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지적내용에 대한 보완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관리주체(점검·진단기관에 한정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7항) 중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④ 관리주체 및 점검·진단기관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결과를 보고한 후에 지적내용에 대한 보완을 완료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시정기간 이내에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3조 중 “정밀안전진단결과”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제84조제4항제2호 중 “성능평가,”를 “성능평가”로 한다.

제8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육훈련계획을 검토하여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정기안전점검 과정 및 해당 분야의”를 “해당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과정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정밀안전점검 과정과 해당 분야의”를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과정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정밀안전진단 과정과 해당 분야의”를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과정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성능평가 과정 및 해당 분야의”를 “해당 분야의 성능평가 과정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정밀안전점검 과정의 토목반, 건축반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각각 정기안전점검 과정의 토목반, 건축반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91조를 삭제한다.

제94조제1항 중 “자에 대하여는”을 “자에게는 별지 제13호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로 한다.

제97조제1항 중 “안전점검등”을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을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로 한다.

제9장의 제목 중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를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등”으로 한다.

제98조를 삭제한다.

제9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조제2항항”을 “영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100조제1항 전단 중 “지정기관은 제98조에 따른”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고시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은”으로, “별표 31”을 “영 별표 1의2에 따른 제

3종시설물의 범위”로, “시설에 대하여 시설”을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설은”을 “시설이거나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하려는 시설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6항) 중 “도로교량”을 “도로 교량”으로, “현황 정보시스템(<http://bti.kict.re.kr>), 「국정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를 “현황정보시스템(<http://bti.kict.re.kr>), 「국정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로,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건축행정시스템”으로 한다.

② 실태조사의 절차는 별표 32와 같으며, 그 외 실태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하는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을 따른다.

⑥ 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안전상태 등 실태조사 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www.fms.or.kr](http://www.fms.or.kr))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01조제1항 중 “결과를”을 “결과 등을”로, “안전등급”을 “안전상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안전등급”을 “안전상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유지관리주체”를 “관리주체”로 한다.

1. 시설물명, 시설물 구분(토목시설, 건축시설), 시설물 종류(교량, 터널 등)  
제103조제1항제2호 중 “별표 31”을 “영 별표1의2 제3종시설물의 범위”로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별표 15를 삭제한다.

별표 16을 삭제한다.

별표 17의 제목 중 “안전성능·내구성능·사용성능 등급 및 종합등급”을 “안전성능·내구성능·사용성능등급 및 종합성능등급”으로 한다.

별표 1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0 제1호가목 중 “서명과 이를 확인하는”을 “서명 등 출결을 확인할 수 있는”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로 한다.

별표 31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제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9] 성능목표 설정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제51조제2항 관련)

구분		고려사항
교량	도로교량	일교통량, 중차량통행량, 차단시 우회거리
	철도교량	일통과량, 평균속도
터널	도로터널	일교통량, 차단시 우회거리
	철도터널	일통과량, 평균속도
항만	계류시설	연간 화물량(백만톤 GT), 하역능력(천톤), 접안능력
댐	다목적댐	연평균 저수용량
건축물	공항청사	연간 이용객 수 및 항공기 운항 편수
하천	하구둑 및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성능평가 세부지침 참조
상수도	광역상수도	가동률
옹벽 및 절토사면		성능평가 세부지침 참조

[별표 21] 기준시설물 (제56조제1항 관련)

시설물		기준규격	계산구분	조정구분
교 량		도로교, 콘크리트구조, 4차로	연장별 계산	- 차로별 - 용도별 - 구조형식별
터 널		도로터널, 2차로	연장별 계산	- 차로별 - 용도별
건축물		콘크리트구조, 상업용	동당 연면적별 계산	- 구조형식별 - 용도별
항 만	계류시설	남해안, 50,000톤급 선좌, 잔교식	개 소	- 해역별 - 구조형식별 - 규모별 - 부두폭별 - 배면매립부 길이별
	외곽시설 (방파제, 파제제, 호안)	남해안, 직립제 및 혼성제 연장 1,000m 상면폭 20m	개 소	- 해역별 - 구조형식별 - 연장별 - 상면 폭별
	갑 문	50,000톤급	개 소	- 규모별
	원유부이식 계류시설 (해저송유관시설)	30만톤급 선좌, 1,000m	개 소	- 규모별 - 해저송유관 길이별
댐		콘크리트 댐체 60m×400m	개 소	- 구조형식별 - 규격별
하구둑		2,000m	개 소	- 연장별
하 천	제방	2.0×2.0×2연, 20m	연장별 계산	- 암거 련수별 - 암거 높이별 - 암거 폭별 - 암거 길이별
	수문		개 소	
	배수펌프장	처리용량별 계산		

시설물		기준규격	계산구분	조정구분
수 도	도·송수관로	관로, 1,500mm	연장별 계산	- 시설종류 및 관경별
	취수시설	취수탑	개소별 계산	- 시설종류별
	정수장		처리용량별 계산	
	취수가압 펌프장		처리용량별 계산	
	배수지		체적별 계산	- 시설종류별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별 계산	
옹벽	콘크리트옹벽, 높이 10m, 길이 200m, 부지옹벽	개 소	- 구조형식별 - 규모별 - 용도별	
절토사면	암사면, 높이 50m, 길이 200m, 국도 부속 절토사면 (편도 2차로 이상)	개 소	- 구성재료별 - 규모별 - 용도별	
공동구	2.0 × 2.0 × 2 연 × 1,000m	연장별 계산	- 시설종류별 - 연수별 - 높이별 - 폭별	

[별표 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제56조제1항 관련)

1 안전점검등의 기준인원수

단위 : 인·일(고급기술자)

구분	규격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기준규격	계산구분	전체	외업	전체	외업	전체	외업	
교량	도로교,	20 m	-	-	-	-	3	2	
	콘크리트구조, 4차로	50 m	82	15	26	10	4	2	
		100 m	90	19	28	11	5	3	
		300 m	124	37	36	16	8	5	
		500 m	157	55	45	21	11	7	
		1,000 m	241	99	67	34	17	10	
		2,000 m	409	188	110	60	29	17	
		4,000 m	630	365	168	112	46	31	
		8,000 m	1,067	720	289	216	80	59	
		16,000 m	1,828	1,431	506	424	140	115	
터널	도로터널, 2차로	50 m					3	2	
	100 m					4	2		
	200 m					5	3		
	300 m	99	25	16	9	5	3		
	500 m	116	34	19	11	6	4		
	1,000 m	156	56	25	16	7	5		
	2,000 m	237	101	39	27	10	7		
	4,000 m	399	191	66	48	17	12		
	8,000 m	723	370	120	90	29	20		
	16,000 m	1,372	729	229	175	54	38		
	32,000 m	2,669	1,446	446	344	102	72		
40,000 m	3,317	1,804	555	429	127	90			
건축물	콘크리트구조, 상업용	500 m <sup>2</sup>					3	2	
	1,000 m <sup>2</sup>					3	2		
	3,000 m <sup>2</sup>					4	2		
	5,000 m <sup>2</sup>	85	26	17	11	5	3		
	10,000 m <sup>2</sup>	93	31	18	12	6	4		
	30,000 m <sup>2</sup>	148	66	29	21	10	7		
	50,000 m <sup>2</sup>	205	102	39	29	14	9		
	100,000 m <sup>2</sup>	347	193	65	50	24	15		
항만	계류시설	남해안, 5만톤급 선좌, 잔교식	1개소	206	103	53	34	21	16

구분		규격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기준규격	계산구분	전체	외업	전체	외업	전체	외업		
항만	외곽시설 (방파제, 파제제, 호안)	남해안, 직립제 및 혼성 제 연장 1,000m 상면폭 20m	1개소	182	90	46	30	19	15		
	갑문	5만톤급	1개소	389	183	76	44	22	14		
	원유부이식 계류시설 (해저충유관시설)	30만톤급 선좌, 1,000m	수상부 1개소 수중부 1개소	84 64	21 41	25 22	15 16	14 -	9 -		
댐		콘크리트 댐체 60m×400m	1개소	566	227	107	53	29	16		
하구둑		2,000m	1개소	425	244	70	37	17	10		
하천	제방		1,000 m	60	17	11	8	6	4		
			2,000 m	74	25	14	10	7	5		
			4,000 m	102	40	20	15	9	6		
	수문	2.0×2.0×2련, 20m	1개소	51	17	14	10	6	4		
				배수펌프장	100 HP	49	14	14	9	5	3
					500 HP	56	18	16	10	6	4
					1,000 HP	65	24	17	11	6	4
2,000 HP	82	34	20		13	7	4				
5,000 HP	135	66	31	21	9	6					
수도	도·송수관 로	관로, 1,500mm	1,000 m	78	16	10	6	5	3		
			2,000 m	92	24	13	8	5	3		
			4,000 m	115	38	17	11	6	4		
			10,000 m	188	80	29	22	7	5		
			30,000 m	434	223	71	57	10	7		
			50,000 m	681	366	113	91	15	10		
			100,000 m	1,293	722	216	178	26	18		
	취수시설	취수탑	1개소	52	17	13	8	6	4		
			2개소	65	25	15	10	9	6		
			3개소	77	33	18	12	10	7		
			4개소	90	41	20	14	12	8		
	정수장		1만 m <sup>3</sup> /일	66	18	14	8	6	4		
			5만 m <sup>3</sup> /일	79	26	16	10	6	4		
			10만m <sup>3</sup> /일	93	35	18	11	7	5		
20만m <sup>3</sup> /일			122	54	23	15	9	6			
40만m <sup>3</sup> /일			181	92	33	23	13	8			

구분		규격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기준규격	계산구분	전체	외업	전체	외업	전체	외업
수도	취수가압 펌프장		1만 m <sup>3</sup> /일	46	12	13	8	5	3
			5만 m <sup>3</sup> /일	51	15	13	8	5	3
			10만m <sup>3</sup> /일	56	18	15	9	6	4
			20만m <sup>3</sup> /일	66	24	17	11	6	5
			50만m <sup>3</sup> /일	97	43	23	15	9	6
	배수지		2,000 m <sup>3</sup>	46	12	12	8	5	3
			5,000 m <sup>3</sup>	51	15	12	8	5	3
			10,000 m <sup>3</sup>	58	19	14	10	6	4
			30,000 m <sup>3</sup>	85	35	18	13	8	5
			50,000 m <sup>3</sup>	113	51	24	18	10	6
공공하수처리시설			1만 m <sup>3</sup> /일	79	26	16	10	6	4
			5만 m <sup>3</sup> /일	88	32	19	12	7	4
			10만m <sup>3</sup> /일	99	39	20	13	8	5
			20만m <sup>3</sup> /일	121	53	24	16	9	6
			40만m <sup>3</sup> /일	166	82	32	23	11	7
옹벽		콘크리트옹벽, 높이 10m, 길이 200m, 부지옹벽	1개소	64	18	15	11	6	4
절토사면		암사면, 높이 50m, 길이 200m, 국도 부속 절토사 면 (편도 2차로 이 상)	1개소	92	31	23	13	8	5
공동구		2.0×2.0×2연	100 m	71	13	11	6	5	3
			300 m	83	18	13	7	5	3
			500 m	94	23	14	8	6	4
			1,000 m	124	37	19	11	7	4
			2,000 m	183	64	29	18	9	5
			4,000 m	301	118	47	30	13	7

※ 항만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 및 갑문의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에는 기계·전기설비의 성능검사 품  
이 포함되어 있음

2. 제1종성능평가의 기준인원수

단위 : 인·일(고급기술자)

구분	규격		제1종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할 경우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활용할 경우		
			기준규격	계산구분	전체	외업	전체	외업	전체
교량	도로교, 콘크리트구조, 4차로	50 m	86	16	110	16	57	10	
		100 m	94	20	119	20	61	12	
		300 m	128	38	155	38	77	20	
		500 m	162	56	190	57	94	29	
		1,000 m	246	100	280	101	135	50	
		2,000 m	416	191	459	191	217	93	
		4,000 m	639	370	682	370	320	178	
		8,000 m	1,081	729	1,131	730	530	350	
		16,000 m	1,851	1,449	1,902	1,449	896	694	
터널	도로터널, 2차로	300 m	103	26	130	26	64	13	
		500 m	120	35	148	35	73	17	
		1,000 m	160	57	190	57	91	27	
		2,000 m	240	101	274	102	128	46	
		4,000 m	403	192	444	192	201	84	
		8,000 m	727	371	783	371	348	161	
		16,000 m	1,375	729	1,462	730	642	314	
		32,000 m	2,672	1,446	2,820	1,447	1,230	621	
건축물 (공항청사)	콘크리트구조, 상업용	5,000 m <sup>2</sup>	87	26	111	28	58	14	
		10,000 m <sup>2</sup>	96	31	120	33	62	17	
		30,000 m <sup>2</sup>	152	67	178	68	90	35	
		50,000 m <sup>2</sup>	207	102	238	105	118	52	
		100,000 m <sup>2</sup>	349	194	387	196	190	98	
항만	계류시설	남해안, 5만톤급 선좌, 잔교식	1개소	228	118	265	123	131	61
댐	콘크리트 댐체	60m×400m	1개소	569	228	672	237	271	90
하구둑	2,000m	1개소	432	247	510	269	248	133	
하천	제방	1,000 m	62	17	78	18	41	11	
		2,000 m	77	26	93	26	49	15	
		4,000 m	105	41	125	42	63	22	
	수문	2.0×2.0×2련, 20m	1개소	54	18	72	22	39	13

구분	규격	제1종성능평가							
		기준규격	계산구분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할 경우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활용할 경우	
				전체	외업	전체	외업	전체	외업
수도	도·송수관로	관로, 1,500mm	1,000 m	83	16	101	16	54	8
			2,000 m	97	24	118	25	62	11
			4,000 m	121	38	145	39	75	18
			10,000 m	196	80	230	82	118	38
			30,000 m	450	223	519	230	262	105
			50,000 m	705	366	809	377	406	172
			100,000 m	1,337	722	1,526	743	765	340
	취수시설	취수탑	1개소	55	18	69	19	35	10
			2개소	70	27	83	28	41	14
			3개소	82	36	96	37	46	18
			4개소	97	45	111	47	52	22
	정수장		1만 m <sup>3</sup> /일	73	20	92	20	42	11
			5만 m <sup>3</sup> /일	88	29	107	30	48	15
			10만m <sup>3</sup> /일	101	38	122	39	56	20
			20만m <sup>3</sup> /일	132	58	152	58	72	30
			40만m <sup>3</sup> /일	191	96	215	97	104	51
	취수가압 펌프장		1만 m <sup>3</sup> /일	50	14	62	14	32	8
			5만 m <sup>3</sup> /일	54	16	67	17	33	9
			10만m <sup>3</sup> /일	60	20	72	20	36	10
			20만m <sup>3</sup> /일	69	25	84	26	41	13
			50만m <sup>3</sup> /일	102	45	117	46	58	24
	배수지		2,000 m <sup>3</sup>	49	13	61	13	31	7
			5,000 m <sup>3</sup>	54	16	67	17	34	9
			10,000 m <sup>3</sup>	61	20	75	21	37	11
			30,000 m <sup>3</sup>	89	37	104	38	51	19
			50,000 m <sup>3</sup>	119	54	134	54	67	28
	옹벽	콘크리트옹벽, 높이 10m, 길이 200m, 부지옹벽	1개소	66	18	78	20	44	10
	절토사면	암사면, 높이 50m, 길이 200m, 국도 부속 절토사면 (편도 2차로 이상)	1개소	101	39	112	41	69	26

※ 제1종성능평가(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활용할 경우)의 기준인원수에는 실시결과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 품이 포함되어 있음.



3 제2종성능평가의 기준인원수

단위 : 인·일(고급기술자)

구분	규격		제2종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을 포함할 경우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활용할 경우		
			기준규격	계산구분	전체	외업	전체	외업	전체
교량	도로교, 콘크리트구조, 4차로	50 m	35	10	42	11	25	6	
		100 m	38	11	45	12	27	7	
		300 m	46	16	55	17	32	10	
		500 m	55	21	65	22	37	12	
		1,000 m	81	35	92	35	51	19	
		2,000 m	127	61	143	61	76	31	
		4,000 m	185	113	201	113	104	57	
		8,000 m	309	217	328	217	168	108	
		16,000 m	526	424	548	425	276	211	
터널	도로터널, 2차로	300 m	20	9	24	10	14	6	
		500 m	23	11	27	12	15	6	
		1,000 m	31	17	34	17	18	8	
		2,000 m	44	27	49	28	24	12	
		4,000 m	74	49	80	49	40	22	
		8,000 m	131	90	140	91	67	39	
		16,000 m	249	176	262	176	124	75	
		32,000 m	481	345	505	345	234	144	
		40,000 m	597	430	627	430	291	180	
건축물 (공항청사)	콘크리트구조, 상업용	5,000 m <sup>2</sup>	22	12	24	12	13	6	
		10,000 m <sup>2</sup>	23	13	25	13	14	7	
		30,000 m <sup>2</sup>	33	21	38	23	21	12	
		50,000 m <sup>2</sup>	44	30	49	31	26	16	
		100,000 m <sup>2</sup>	71	51	77	52	40	26	
항만	계류시설	남해안, 5만톤급 선좌, 잔교식	1개소	65	36	77	41	43	22
			콘크리트 댐체 60m×400m	1개소	123	51	156	54	77
댐		2,000m	1개소	89	40	101	40	55	21
하구둑		1,000 m	13	8	15	9	9	5	
하천		제방	2,000 m	18	11	19	11	11	6
			4,000 m	24	16	26	16	15	9
			수문	2.0×2.0×2연, 20m	1개소	19	12	22	13

구분	규격		제2종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을 포함할 경우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활용할 경우
	기준규격	계산구분	전체	외업	전체	외업	전체	외업	
수도	도·송수관 로	관로, 1,500mm	1,000 m	14	7	15	7	9	4
			2,000 m	17	9	19	9	11	5
			4,000 m	22	12	25	13	14	7
			10,000 m	35	24	39	25	23	14
			30,000 m	85	62	92	65	52	35
			50,000 m	136	100	147	104	83	56
			100,000 m	257	195	276	203	157	110
	취수시설	취수탑	1개소	18	10	20	10	11	6
			2개소	21	12	23	12	14	8
			3개소	25	15	27	15	17	10
			4개소	29	18	32	19	18	11
	정수장		1만 m <sup>3</sup> /일	20	10	24	11	15	7
			5만 m <sup>3</sup> /일	21	11	26	13	16	8
			10만m <sup>3</sup> /일	25	13	28	14	17	8
			20만m <sup>3</sup> /일	29	17	33	18	19	10
			40만m <sup>3</sup> /일	39	24	44	26	25	14
	취수가압 펌프장		1만 m <sup>3</sup> /일	19	10	22	11	14	7
			5만 m <sup>3</sup> /일	19	10	22	11	14	7
			10만m <sup>3</sup> /일	21	11	24	12	16	8
			20만m <sup>3</sup> /일	24	14	26	14	17	9
			50만m <sup>3</sup> /일	31	18	33	18	20	11
배수지		2,000 m <sup>3</sup>	17	10	20	11	13	7	
		5,000 m <sup>3</sup>	17	10	20	11	13	7	
		10,000 m <sup>3</sup>	20	13	22	13	14	8	
		30,000 m <sup>3</sup>	23	15	26	16	16	10	
		50,000 m <sup>3</sup>	30	21	32	21	20	13	
옹벽	콘크리트옹벽, 높이 10m, 길이 200m, 부지옹벽	1개소	19	13	20	12	12	7	
절토사면	암사면, 높이 50m, 길이 200m, 국도 부속 절토사면 (편도 2차로 이상)	1개소	29	13	34	15	21	8	

※ 제2종성능평가(정밀안전점검 결과를 활용할 경우)의 기준인원수에는 실시결과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 품이 포함되어 있음.

[별표 25] 직접경비 비용산정 기준(제59조 관련)

1. 여비 및 현장체재비

가. 체재비 :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나. 여 비

- 이동수단 : 철도운임 실비 일반실 기준

- 인원수

◦정기안전점검 : 용역당 2인 1회 왕복

◦정밀안전점검 및 제2종성능평가 : 용역당 8인 1회 왕복

◦정밀안전진단 및 제1종성능평가 : 용역당 10인 1회 왕복

2. 현지 차량운행비

가. 차량의 종류 : 승용차(배기량 2,000cc 이하)

나. 차량대수 : 외업인원수(고급기술자 기준) 4인 이내 1대  
(4인 초과시 4인당 1대 추가)

다. 대가방법

- 차량비는 손료와 재료비로 계상한다.

- 시간당 손료(상각비, 정비비, 관리비) 계수 :  $1,547 \times 10^{-7}$

- 주연료(휘발유) : 10ℓ/일

- 잡품 : 주연료비의 10%

3. 현지보조인부의 노임

가. 적용인수 : 외업인원수의 40% 적용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동일)

나. 적용 임금 : 특별인부의 시중 노임단가 적용

4. 위험수당

가. 시설물별 작업 위험도에 따라 적용

나. 현지 직접인건비의 10~20%

5. 기계·기구손료

가. 정밀안전점검 및 제2종성능평가 : 직접인건비(별표 22의 전체기준)의 5%

나. 정밀안전진단 및 제1종성능평가 : 직접인건비(별표 22의 전체기준)의 10%

6. 보고서 등 인쇄비

가.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 50쪽, 10부(부록포함) 및 전자저장매체 5부 기준

나.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 300쪽, 10부(부록포함) 및 전자저장매체 5부 기준

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400쪽, 20부(부록포함) 및 전자저장매체 5부 기준

라. 성능평가 보고서 : 400쪽, 20부(부록포함) 및 전자저장매체 5부 기준

마. 기술심의 보고서 : 400쪽, 20부(부록포함)

단, 보고서 쪽수 및 부수가 기준과 크게 상이할 경우 대가를 협의 조정할 수 있으며,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을 포함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보고서 인쇄비는 각각 계상한다.

##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 1. 공사개요

①공사명							
공사기간	. . . ~ . . .			감독자			
②총 공사금액				③계약방법			
④관리주체명		대 표 자		전화		구분	공공·민간
시공자명		대 표 자		전화			
설계자명		대 표 자		전화			

### 2. 시설물의 현황

⑤(시설물명)	⑥시설물 구분		⑦종류				
	⑧종별		⑨성능평가 대상				
	⑩시설물 형식 및 규모		⑪준공일 (임시)사용승인일				
	⑫시설물 위치						
	⑬관련 점검 및 진단, 성능평가		실시일시	. . . ~ . . .			
	⑭안전등급		⑮성능등급	(종합성능등급)			(성능목표)
			(안전성능등급)	(내구성능등급)	(사용성능등급)		

※ ( )에는 해당 내용 직접 작성  
 ※ 대상시설물이 2개 이상일 경우 본 서식을 추가하여 연속하여 작성

### 3. 보수·보강 실시내역

시설물명							
⑯공사금액	천원			⑰공사기간	. . . ~ . . .		
⑱관련 점검 및 진단, 성능평가 용역명(또는 실시사유)							
⑲(공법명)	⑳공사구분		㉑금액	천원			
	㉒적용부재						
	㉓단위		㉔수량				

※ ( )에는 보수·보강을 실시한 부재명을 작성하며, 보수·보강 실시 부재가 2개 이상일 경우 본 서식을 추가하여 연속하여 작성  
 ※ 대상시설물이 2개 이상일 경우 별지 작성 가능

4. 사용제한 조치실적

시설물명			
㉕ 제한구분		제한기간	. . . ~ . . .
㉖ 실시사유			
㉗ 주민공지		㉘ 공지방법	

※ 대상시설물이 2개 이상일 경우 본 서식을 추가하여 연속하여 작성

첨부자료	1.시설물 손상 원인 및 현황 개요(점검 및 진단, 성능평가 결과가 아닌 별도의 보수·보강을 실시한 경우) 2.보수·보강 실시내역(3.보수·보강 실시내역의 별지가 있을 경우) 3.보수·보강 사진첩 4.보수·보강 설계도서(보수·보강을 실시로 인해 기존제원의 변경된 경우) 5.성능목표 변경사유서(성능평가 대상시설물의 성능목표가 변경된 경우)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지관리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유지관리업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귀하

※ 기재요령(모두 한글로 적습니다)

1. ①의 "공사명"란에는 보수·보강 등의 공사(계약)명을 적습니다.
2. ②의 "총 공사금액"란에는 계약서상 공사 실시 총 금액을 천원 단위로 적습니다.
3. ③의 "계약방법"란에는 일반경쟁·제한경쟁·수의 또는 기타로 구분 적습니다.
4. ④의 "관리주체명"란에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 및 상호명을 적습니다.  
 ※ "시공자명" 및 "설계자명"의 경우에도 이를 수행한 업자의 상호를 적습니다.
5. ⑤의 "시설물명"란에는 해당 시설물의 시설물 관리대상상의 시설물명과 일치하도록 적고, 시설물 관리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고유명칭을 적습니다.
6. ⑥의 "시설물 구분"란에는 다음 시설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하천·상하수도·옹벽 및 절토사면·공동구
7. ⑦의 "종류"란에는 다음 시설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도로교량·도로터널·지하차도·복개구조물·고속철도교량·고속철도터널·고속철도역시설·도시철도교량·도시철도고가교·도시철도터널·도시철도역시설·일반철도교량·일반철도터널·육교·갑문시설·계류시설·방파제·파제제·호안·다목적댐·발전용댐·홍수전용댐·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전용댐·공동주택·공동주택외건축물·문화및집회시설·관람장·종교시설·판매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공공업무시설·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운동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관광휴게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일반철도역사·공항청사·항만여객터미널·지하도상가·광역철도역시설·장례시설·하구둑·방조제·수문및통문·제방및부속시설·다기능보·배수펌프장·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지방상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옹벽·절토사면·공동구·기타
8. ⑧의 "종별"란에는 영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이 1종인 경우에는 "1", 2종인 경우에는 "2", 3종인 경우에는 "3", 그 외 시설물인 경우 "기타"로 적습니다.
9. ⑨의 "성능평가 대상"이란 영 별표 1의 성능평가 대상시설물인 경우에는 "대상", 아닐 경우에는 "비대상"으로 적습니다.
10. ⑩의 "시설물의 형식 및 규모"란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적습니다.

구 분	형 식	규 모
교 량	( )	연장( )m, 최대경간장( )m, 차로수( )
복 개 구 조 물	( )	연장( )m, 가로( )m, 세로( )m,
터 널	( )	연장( )m, 차로수( )
지 하 차 도	( )	연장( )m, 차로수( )
갑 문 시 설	( )	최대통과선박톤수( )톤
방파제·파제제·호안	( )	연장( )m, 높이( )m
계 류 시 설	( )	최대계류선박규모( )톤
댐	( )	저수용량( )천만m <sup>3</sup>
건 축 물	( )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m <sup>2</sup>
지 하 도 상 가	( )	지하( )층, 연면적( )m <sup>2</sup>
하 구 둑	( )	연장( )m, 높이( )m
수 문 및 통 문	( )	가로( )m, 세로( )m, 문비수( )
제 방	( )	연장( )m, 높이( )m
다 기 능 보	( )	연장( )m, 높이( )m
배 수 펌 프 장	( )	총 펌프용량( )m <sup>3</sup> /분
상 수 도	( )	공급능력( )만m <sup>3</sup> /일
공 공 하 수 처 리 시 설	( )	최대처리용량( )m <sup>3</sup> /일
옹 벽	( )	최대높이( )m, 연장( )m
절 토 사 면	( )	최대연직높이( )m, 단일수평연장( )m
공 동 구	( )	연장( )m, 련수( )련, 폭( )m

11. ⑪의 "준공일"란에는 시설물의 준공((임시)사용승인)연월일(YYYY-MM-DD)을 적습니다.
12. ⑫의 "시설물 위치"란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재지를 번지까지 정확히 적습니다.
13. ⑬의 "관련 점검 및 진단, 성능평가"란에는 보수·보강 실시와 관련된 점검 및 진단, 성능평가 실적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인 경우에는 "정기", 정밀안전점검인 경우에는 "정밀", 긴급안전점검인 경우에는 "긴급", 정밀안전진단인 경우에는 "진단", 성능평가인 경우에는 "성능", 그 외에는 "기타"로 적습니다.
14. ⑭의 "안전등급"란에는 ⑬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따른 안전등급(A, B, C, D, E)을 적습니다.(성능평가일 경우 공란)
15. ⑮의 "성능등급"이란 ⑬의 성능평가 실시결과에 따른 종합성능등급, 안전성능등급, 내구성능등급, 사용성능등급(A, B, C, D, E)을 적습니다. 성능목표는 관리주체가 설정한 해당시설물의 목표 종합성능등급(A, B, C, D, E)을 적습니다.(성능평가 대상시설물만 해당)
16. ⑯의 "공사금액"란에는 해당시설물에 소요된 공사금액을 천원 단위로 적습니다.
17. ⑰의 "공사기간"란에는 해당시설물에 소요된 공사기간을 적습니다.
18. ⑱의 "관련 점검 및 진단, 성능평가 용역명(또는 실시사유)"란에는 해당시설물의 공사와 관련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계약)명을 작성하며,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실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9. ⑲의 "공법명"란에는 보수·보강을 위해 적용된 공법 및 방법을 적습니다
20. ⑳의 "공사구분"란에는 시설물의 공사 유형에 맞추어 "보수", "보강", "개축", "변경-증설", "변경-구조변경", 그 외의 경우 "기타"로 적습니다.
21. ㉑의 "금액"란에는 해당부재에 소요된 공사금액을 적습니다.
22. ㉒의 "세부위치"란에는 보수·보강이 실시된 세부부재명을 적습니다.
23. ㉓의 "단위"란에는 해당 보수·보강 공사 설계 시 고려된 기본단위(m, m<sup>2</sup>, kg, ton, ea 등)를 적습니다.
24. ㉔의 "수량"은 ㉓의 단위에 따라 해당 보수·보강 공사 설계 또는 수행된 수량(물량)을 적습니다.
25. ㉕의 "제한구분"란에는 보수·보강 공사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여부에 따라 "일부 사용제한", "전면 사용제한", "사용제한 없음"을 적습니다.
26. ㉖의 "실시사유"란에는 ㉕의 사용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제한을 실시한 사유를 적습니다.
27. ㉗의 "주민공지"란에는 ㉕의 사용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주민들에게 공지 유무에 대해 "실시", "미실시"로 적습니다.
28. ㉘의 "공지방법"란에는 ㉗의 주민공지를 실시하였을 경우 공지를 한 방법에 따라 "안내표지판", "현수막", "방송", "인터넷"으로 작성하며, 그 외 방법을 통해 공지하였을 경우에는 "기타"라고 적습니다.(복수 작성 가능)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평가서

본 평가 결과에 대한 내용은 외부에 공개될 수 없사오니 비밀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평가서

시설물 점검개요

과업명		평가자	소속 : 직위 : 성명 :
시설물 개요		관리주체	
		준공년도	
		점검기간	
		계약금액	
		안전등급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평가표

평가항목	가 중 치 (A)	평가척도 (B)					배점 (A×B)	평가 결과 요약
		적정	대체로 적정	보통	약간 부족	부족		
		5	4	3	2	1		
<b>I. 점검계획의 수립 및 자료조사</b>								
① 점검계획수립 및 보고서체계의 적정성 ·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사전검토(0.3) · 과업수행계획서 작성(0.4) · 보고서 작성 체계 등(0.3)	1.0							
② 자료조사·분석의 적정성 · 설계도서 및 시공자료 등 조사(0.8) ·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관련 자료조사 (0.6) · 기존 점검·진단보고서 검토·분석 등 (0.6)	2.0							
<b>II. 현장조사 · 시험</b>								
③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 하중상태 등 조사(1.0) · 부재변형 등 조사(1.0) · 손상,결함,열화 등 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1.0) · 결함(손상) 발생원인 분석(1.0)	4.0							

평가항목	가 중 치 (A)	평가척도 (B)					배점 (A×B)	평가 결과 요약	
		적정	대체로 적정	보통	약간 부족	부족			
		5	4	3	2	1			
<b>II. 현장조사 · 시험</b>									
④ 현장 비파괴시험, 재료시험 등 각종 시험·분석의 적정성  · 조사·시험 항목 선정(1.0) · 조사·시험 방법 및 수량(1.0) · 조사·시험 결과 분석·평가(1.0)	3.0								
<b>III. 검토·분석</b>									
⑤ 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추정의 적정성  · 결함 항목별 원인추정(1.5) · 부재(부위)별 원인추정 등(1.5)	3.0								
⑥ 평가결과의 적정성  · 상태평가결과(3.0) · 안전성평가결과(필요시) · 안전등급 지정 등(1.0)	4.0								
<b>IV. 종합결론의 적정성</b>									
⑦ 종합결론의 적정성  · 종합결론(1.0) · 보수·보강 방안(필요시)등 · 안전·유지관리 필요사항 조치(2.0)	3.0								
계	평가점수 (100점 만점)	20.0	/					평가 필요여부	

- 대상구조물의 구조적 특성 및 중요도 등에 따라 본 서식의 평가항목 및 가중치를 변경할 수 있음.
- ⑥평가결과의 적정성에서 필요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상태평가 결과(1.5), 안전성평가(1.5)로 반영함.
- ⑦종합결론의 적정성에서 필요에 따라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한 경우는 보수·보강방안(1.0), 안전·유지관리 필요사항 조치(1.0)로 반영함.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평가서

본 평가 결과에 대한 내용은 외부에 공개될 수 없사오니 비밀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평가서

시설물 진단개요

과업명		평가자	소속 : 직위 : 성명 :
		관리주체	
시설물 개요		준공년도	
		진단기간	
		계약금액	
		안전등급	

##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표

평가항목	가 중 치 (A)	평가척도 (B)					배점 (A×B)	평가 결과 요약
		적정	대체로 적정	보통	약간 부족	부족		
		5	4	3	2	1		
<b>I. 진단계획의 수립 및 자료조사</b>								
① 진단계획수립 및 보고서체계의 적정성 ·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사전검토(0.3) · 과업수행계획서 작성(0.4) · 보고서 작성 체계 등(0.3)	1.0							
② 자료조사·분석의 적정성 · 설계도서 및 시공자료 등 조사(0.8) ·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관련 자료조사(0.6) · 기존 점검·진단보고서 검토·분석 등(0.6)	2.0							
<b>II. 현장조사 · 시험</b>								
③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 하중상태 등 조사(0.7) · 부재변형 등 조사(0.7) · 손상,결함,열화 등 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0.7) · 결함(손상) 발생원인 분석(0.9)	3.0							
④ 현장 비파괴시험, 재료시험 등 각종 시험·분석의 적정성 · 조사·시험 항목 선정(0.6) · 조사·시험 방법 및 수량(0.6) · 조사·시험 결과 분석 및 평가(0.8)	2.0							

평가항목	가중치 (A)	평가척도 (B)					배점 (A×B)	평가 결과 요약		
		적정	대체로 적정	보통	약간 부족	부족				
		5	4	3	2	1				
<b>III. 검토·분석</b>										
⑤ 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 구조해석 위치(대상)선정, 재료물성 등 해석조건 적용(1.0) · 모델링 및 해석방법(1.0) · 내하력 판정 및 안전성검토 결과 등(1.0)	3.0									
⑥ 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추정의 적정성 · 결함항목별 원인추정(1.0) · 부재(부위)별 원인추정 등(1.0)	2.0									
⑦ 평가결과의 적정성 · 상태평가결과(1.0) · 안전성평가결과(1.0) · 안전등급 지정 등(1.0)	3.0									
<b>IV. 보수·보강 공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의 적정성</b>										
⑧ 보수·보강 방법의 적정성 ·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및 수준의 결정(0.6) · 보수·보강 공법의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0.8) · 유지관리방안 제시(0.6)	2.0									
<b>V. 종합결론의 적정성</b>										
⑨ 종합결론의 적정성 · 종합결론(1.0) · 사용제한 등 안전 및 유지관리 필요사항 조치 등(1.0)	2.0									
계	평가점수 (100점 만점)	20.0	/						평가 필요여부	

1. 대상구조물의 구조적 특성 및 중요도 등에 따라 본 서식의 평가항목 및 가중치를 변경할 수 있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조사보고서

1. 시설물 점검(진단)개요

과업명		검토자	소속 : 직위 : 성명 :
시설물 개요		관리주체	
		준공년도	
		점검(진단)기간	
		계약금액	
		안전등급	

가. 점검(진단)실시결과 확인내용

지침·세부지침 기준	과업지시서 내용	점검(진단) 실시결과

나. 누락(미흡)사유 및 관리주체 조치계획

○ 누락(미흡)사유
○ 관리주체 조치계획

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검토의견

--

※ 검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음.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사전통보서**

**□ 시설물 점검(진단)개요**

시설물명		평가자	
------	--	-----	--

**□ 점검(진단)실시결과 평가결과**

1. 점검계획수립 및 보고서체계의 적정성
  - 1)검토내용
  - 2)개선필요사항
2. 자료조사·분석의 적정성
  - 1)검토내용
  - 2)개선필요사항
3.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 1)검토내용
  - 2)개선필요사항
4. 현장 비파괴시험, 재료시험 등 각종 시험·분석의 적정성
  - 1)검토내용
  - 2)개선필요사항
5. 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추정의 적정성
  - 1)검토내용
  - 2)개선필요사항
6. 평가결과의 적정성
  - 1)검토내용
  - 2)개선필요사항
7. 구조해석, 안전성 검토 등의 적정성(정밀안전진단 시)
  - 1)검토내용
  - 2)개선필요사항
8. 종합결론의 적정성
  - 1)검토내용
  - 2)개선필요사항
9. 보수·보강방법의 적정성(정밀안전진단 시)
  - 1)검토내용
  - 2)개선필요사항

**□ 종합의견**

※ 종합의견에 주요 개선 필요사항과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검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음)

###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심의요청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 위원장 귀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9조에 따라 아래의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심의를 요청합니다.

1. 시설물명 :
2. 관리주체 :
3. 관련서류 : 불임 참조

- 불임 1.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1부.  
2.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서 1부.  
3. 기타 관련서류 1부. 끝.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심의서

본 평가결과의 내용은 외부에 공개될 수 없사오니  
비밀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심의서

□ 개요

과업명		심의위원	성명 :	(서명)
-----	--	------	------	------

□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심의표

심 의 항 목	가 중 치 (A)	심의척도(B)										배점 (A×B)	지적내용 요약	
		적 정		대체로 적 정		보 통		약 간 부 족		부 족				
		10	9	8	7	6	5	4	3	2	1			
① 점검 계획수립 및 보고서체계의 적정성  ·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사전검토 (0.15)  · 과업수행계획서 작성(0.2)  · 보고서 작성 체계 등(0.15)	0.5													
② 자료조사·분석의 적정성  · 설계도서 및 시공자료 등 조사(0.4)  ·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관련 자료조사(0.3)  · 기존 점검 및 진단보고서 검토·분석 등(0.3)	1.0													
③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 하중상태 등 조사(0.5)  · 부재변형 등 조사(0.5)  · 손상,결합,열화 등 조사 및 외관 조사망도 작성(0.5)  · 결합(손상) 발생원인 분석(0.5)	2.0													

심 의 항 목	가 중 치 (A)	심의척도(B)										배점 (A×B)	지적내용 요약	
		적 정		대체로 적		보 통		약 간 부족		부 족				
		10	9	8	7	6	5	4	3	2	1			
④ 현장 비파괴·재료시험 등 각종 시험·분석의 적정성 · 조사·시험 항목 선정(0.5) · 조사·시험 방법 및 수량(0.5) · 조사·시험 결과 분석·평가(0.5)	1.5													
⑤ 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추정의 적정성 · 결함 항목별 원인추정(0.75) · 부재(부위)별 원인추정 등(0.75)	1.5													
⑥ 평가결과의 적정성 · 상태평가결과(1.5) · 안전성평가결과(필요시) · 안전등급 지정 등(0.5)	2.0													
⑦ 종합결론의 적정성 · 종합결론(0.5) · 보수·보강방안 등(필요시) · 안전·유지관리 필요사항 조치(1.0)	1.5													
계	심의 점 수 (100점 만점)	10.0												

1. 대상구조물의 특성 또는 추가조사 항목 실시결과 등 필요시 심의항목 및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음
2. 심의항목은 시설물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3. 심의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음
4. ⑥평가결과의 적정성에서 필요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상태평가 결과(0.75), 안전성평가(0.75)로 반영함
5. ⑦종합결론의 적정성에서 필요에 따라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한 경우는 보수·보강방안(0.5), 안전·유지관리 필요사항 조치(0.5)로 반영함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심의 의견

※ 작성방법

1.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필요사항과 관련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안전등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급 및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3.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 반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작성일 : 20 . . .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심의서

본 평가결과의 내용은 외부에 공개될 수 없사오니 비밀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심의서

□ 개요

과업명		심의위원	성명 :	(서명)
-----	--	------	------	------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심의표

심 의 항 목	가 중 치 (A)	심 의 척 도 (B)										배 점 (A×B)	지 적 내 용 요 약	
		적 정		대 체 로 적 정		보 통		약 간 부 족		부 족				
		10	9	8	7	6	5	4	3	2	1			
① 진단계획 수립 및 보고서체계의 적정성 ·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사전검토(0.15) · 과업수행계획서 작성(0.2) · 보고서 작성 체계 등(0.15)	0.5													
② 자료조사·분석의 적정성 · 설계도서 및 시공자료 등 조사(0.4) ·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관련 자료조사(0.3) · 기존 점검·진단보고서 검토·분 석 등(0.3)	1.0													
③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 하중상태 등 조사(0.35) · 부재변형 등 조사(0.35) · 손상,결함,열화 등 조사 및 외 관조사망도(0.35) · 결함(손상) 발생원인 분석(0.45)	1.5													
④ 현장 비파괴·재료시험 등 각종 시험·분석의 적정성 - 강도, 탄산화, 염화물, 철근부식, 철근배근상태 강재부식, 접합부 등에 대한 · 조사·시험 항목 선정(0.3) · 조사·시험 방법 및 수량(0.3) · 조사·시험결과 분석 및 평가(0.4)	1.0													

심 의 항 목	가 중 치 (A)	심의척도(B)										배점 (A×B)	지적내용 요약	
		적 정		대체로 적정		보 통		약 간 부족		부 족				
		10	9	8	7	6	5	4	3	2	1			
⑤ 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 해석 위치(대상)선정, 재료물성 등 해석조건 적용(0.5) · 모델링 및 해석방법(0.5) · 내하력 판정 및 안전성검토 등 (0.5)	1.5													
⑥ 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추정의 적정성 · 결함 항목별 원인추정(0.5) · 부재(부위)별 원인추정 등(0.5)	1.0													
⑦ 평가결과의 적정성 · 상태평가결과(0.5) · 안전성평가결과(0.5) · 안전등급 지정 등(0.5)	1.5													
⑧ 보수·보강 방법의 적정성 ·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및 수준의 결정(0.3) · 보수·보강 공법의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0.3) · 유지관리방안 제시(0.4)	1.0													
⑨ 종합결론의 적정성 · 종합결론(0.5) · 사용제한 등 안전 및 유지관리 필요사항 조치 등(0.5)	1.0													
계	심의 점 수 (100점 만점)	10.0												

1. 대상구조물의 특성 또는 추가조사 항목 실시결과 등 필요시 심의항목 및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음
2. 심의항목은 시설물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3. 심의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음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심의 의견

※ 작성방법

1.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필요사항과 관련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안전등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급 및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3.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작성일 : 20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귀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77조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붙임 :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심의결과 1부. 끝.

20 . .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 위원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심의결과

□ 심의대상

- 1. 시설물명 :
- 2. 관리주체 :
- 3. 심의일시 :
- 4. 심의장소 : ~

□ 심의내용

- 1. 심의결과 : 걱정, 미흡, 불량, 매우 불량
- 2. 지적내용
  - ①
  - ②
  - ③
  - ④
  - ⑤
- 3. 안전등급 변경 필요여부 및 그 사유 : 필요한 경우
- 4. 시설물 중대한결함등 반영 필요여부 및 그 사유 : 필요한 경우
- 5. 내진보강 권고사항 및 그 사유 : 필요한 경우
- 6. 지적내용에 대한 시정기간 : 미흡, 불량, 매우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 소위원장 성명 :

(서명)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평가대상

- 1. 시설물명 :
- 2. 관리주체 :
- 3. 실시자 :
- 4. 실시기간 : ~

□ 평가내용

- 1. 평가결과 : 적정, 미흡, 불량, 매우 불량
- 2. 지적내용
  - ①
  - ②
  - ③
  - ④
  - ⑤
- 3. 안전등급 변경 필요여부 및 그 사유 : 필요한 경우
- 4. 시설물 중대한결함등 반영 필요여부 및 그 사유 : 필요한 경우
- 5. 내진보강 권고사항 및 그 사유 : 필요한 경우
- 6. 지적내용에 대한 시정기간 : 미흡, 불량, 매우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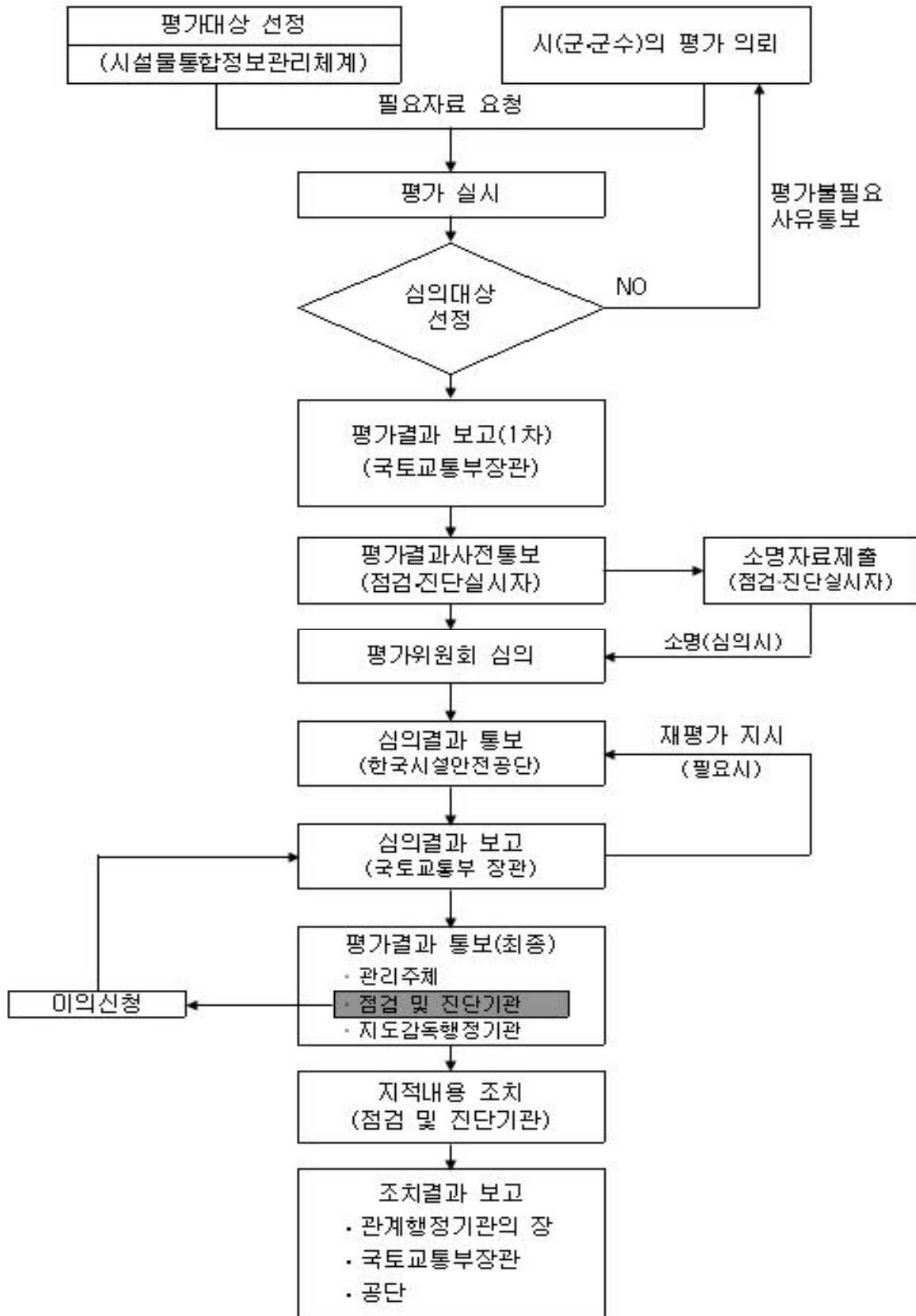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시설물명			
2. 점검·진단기간			
3. 점검·진단기관			
4. 책임기술자	소속	성명:	(인)
5. 관리주체			
6. 평가결과	*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중 해당하는 결과를 기입.		
이의신청 사항		사유	
※ 이의신청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시정조치결과

1. 시설물명			
2. 점검·진단기간			
3. 점검·진단기관			
4. 책임기술자	소속	성명:	(인)
5. 관리주체			
6. 시정내용	※ 제78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적내용에 대해 시정·보완한 조치 내용을 상세히 기술		
	통보받은 지적내용	지적내용에 대한 조치결과	
※ 조치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음.			
7. 관리주체 확인			
○ 확인자 소속 :	직위 :	성명:	(인)
○ 관리주체의 장 :	(인)		

## 평가업무 흐름도



<참고자료>

제 호

# 수료증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교육과정:

교육종류:

교 육 명: 정기안전점검과정(토목반) 신규 교육

교육기간: . . . ~ . . . ( 시간)

위 사람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10조, 지침 제94조에 따라 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교육기관의 장

직인

작성방법

1. 교육명은 다음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되 '( )' 내에 해당분야를 반으로 명확히 표기하고,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여부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 가. 정기안전점검과정(토목반/건축반) 신규/보수 교육
  - 나. 정밀안전점검과정(토목반/건축반) 신규/보수 교육
  - 다. 정밀안전진단과정(교량 및 터널반/ 수리시설반/ 항만반/ 건축반) 신규/보수 교육
  - 라. 성능평가(교량 및 터널반/ 수리시설반/ 항만반/ 건축반) 신규/보수 교육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제6장 : 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법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등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거나 법 제26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에게 점검 및 진단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6. 제7장 : 법 제60조 및 영 제43조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7.·8. (생략)

② (생략)

③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비용 산정은 이 지침의 비용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과업에 대한 비용산정 기준이 없는 경우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거나 안전점검등의 기본과업 내용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이 지침의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1. ~ 4. (현행과 같음)

5. -----  
-----  
-----  
----- 안전  
점검등 및 성능평가-----  
-----  
-----  
-----  
-----.

6. -----  
-----  
-----  
-----  
----- 실시결과-----  
-----.

7.·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  
-----  
-----  
----- 안전  
점검등 및 성능평가-----  
-----  
-----.

제8조(안전점검등 일반) ① ~ ⑧  
(생략)

⑨ 법 제22조에 따라 안전점검등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실시결과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4조, 제25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⑩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표 5와 같고, 세부결함의 정도는 세부지침에 따른다.

제9조(정기안전점검 수행방법) ①  
(생략)

② 제1항에 의한 점검자는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중대한 결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점검자 및 관리주체는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즉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점검등 일반)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  
-----  
-----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및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이하 “중대한결함등”이라 한다)-----  
-----  
-----  
-----  
-----  
-----  
-----  
-----  
-----.

⑩ 중대한결함등의 -----  
-----  
-----.

제9조(정기안전점검 수행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중대한결함등-----  
-----.

③ -----  
----- 중대한결함등-----  
-----  
-----  
-----.

④ (생략)

제11조(긴급안전점검 수행방법) 긴급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 요청한 때에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이며 실시목적에 따라 손상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하고 별표 6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점검등 실시자의 자격)

① 안전점검등의 책임기술자는 영 별표 5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규칙 제10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제84조의 해당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등의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설계 및 평가, 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공학적 및 기술적인 면에서의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정밀안전진단의 참여기술자는 영 별표 11의 등록기준에 규정된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칙 제10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긴급안전점검 수행방법) --  
-----  
----- 관계 행정  
기관-----  
-----  
-----  
-----  
-----  
-----  
-----.

제14조(안전점검등 실시자의 자격)

①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  
-----  
-----  
-----  
-----.

②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  
-----  
-----  
-----.

③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참여기술자는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3조(안전성능 평가 일반) ① (생략)

② 상태안전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태평가”는 “상태안전성능”,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점검등”은 “성능평가”로 본다.

③ (생략)

④ 책임기술자는 상태안전성능과 구조안전성능에 대한 외관조사와 각종 시험·측정의 검토 또는 해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15에 따른 안전성능 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4조(내구성능 평가 방법) ① ·

② (생략)

③ 책임기술자는 내구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결과, 부재의 열화 정도 등을 통하여 시설물의 사용환경과 시설물의 물리적 상태를 함께 검토하여 별표 15에 따른 내구성능 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5조(사용성능 평가 방법) ① (생략)

② 책임기술자는 현장조사, 설계도서 및 관리기준 등의 검토 결

제43조(안전성능 평가 일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제3항부터 제5항까지-----  
-----.  
“상태안전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영 별표 14--- 안전성능등급  
-----.

제44조(내구성능 평가 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영 별표 14-----  
- 내구성능등급-----  
--.

제45조(사용성능 평가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과와 시설물의 준공 이후 사용성  
능과 관련된 평가 지표의 변동  
유무를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하  
고 별표 15에 따른 사용성능 등  
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6조(종합평가 및 종합성능등급  
지정) ① 책임기술자는 성능평가  
를 통해 결정된 안전성능, 내구성  
능, 사용성능 등급을 종합하여 별  
표 16의 종합성능등급을 결정하  
여야 한다.

② 종합평가 및 종합성능등급의  
산정 절차와 방법은 세부지침에  
따르며, 최종적으로 안전성능, 내  
구성능, 사용성능 등급과 함께 종  
합등급의 결과를 별표 17과 같이  
작성하여 보고서에 수록한다.

③ 이전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  
용성능 및 종합등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성능평가 실시결과와  
유지관리(보수·보강 등) 이력  
등을 검토하여 변경된 사유를 성  
능평가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8조(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생략)

②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제36조제

-----  
-----  
-----  
- 영 별표 14--- 사용성능등급-  
-----.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종합평가 및 종합성능등급  
지정) ① -----  
-----  
-----

영 별표 14-----  
-----.

② -----  
-----  
-----

----- 사용성능등급과 함께 종합  
성능등급-----  
-----.

③ -----  
-----

----- 종합성능등급-----  
-----  
-----

제48조(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36조제2

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등”을 “성능평가”로 본다.

제49조(안전점검등의 준용사항) ①  
성능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준비  
해야 할 사항, 성능평가를 위한  
조사시험 항목 선정 시의 고려사  
항, 성능평가 장비에 관한 사항,  
중대한 결함에 관한 사항은 제8  
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등”  
은 “성능평가”로 본다.

② ~ ⑤ (생략)

제6장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제55조(비용의 산정기준 원칙) ①  
안전점검등 비용(이하 “대가”라  
한다)은 제3장에서 규정된 업무  
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과업  
의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와 선택과업비를 합산하  
여 산정한다.

② 대가는 정액적산방식(안전점검  
등의 실시에 소요되는 기준 인  
원수를 기초로 하여 대가를 산출  
하는 방식)에 따라 산출함을 원  
칙으로 한다.

③ 선택과업비용은 기본과업 외

항-----  
-----  
-----.

제49조(안전점검등의 준용사항) ①  
-----  
-----  
-----  
-----  
중대한결함등-----  
----- 제10항-----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장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제55조(비용의 산정기준 원칙) ①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  
----- 제3장 및 제4장-----  
----- 기본과업비(직  
접인건비----- 직접  
경비)와 선택과업비(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

②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  
-----.

③ -----

에 관리주체가 안전점검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로 하거나 책임기술자가 사전조사 후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해 추가한 과업의 비용으로 제60조에 따라 실비로 계상한다.

제56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라 함은 점검 및 진단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인원 등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별표 21의 기준시설물에 대한 별표 22의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 인원수에 대하여 별표 23의 시설물별 조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 ⑥ (생략)

제59조(직접경비)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 점검 및 진단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점검 및 진단요원 등의 현지여비 및 체재비, 현지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 비용을 포함하며 계상기준은 별표 25에 따라 실비로 계상한다.

1. ~ 6. (생략)

제60조(선택과업 비용)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별표 26을 참조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및 기술료 등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제56조(직접인건비) ① -----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업무-----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9조(직접경비) -----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업무----- 기술자 -----

1. ~ 6. (현행과 같음)

제60조(선택과업 비용) -----  
-----  
----- 제경비, 기술료 및 직



은 제56조부터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 16. (생략)

제63조(평가의 대상) ① 법 제18조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협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시설물에 영 제18조제1항 및 규칙 제19조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 또는 손괴가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2단계 이상 상향되

접경비는 -----  
-----.

1. ~ 16. (현행과 같음)

제63조(평가의 대상) 법 제18조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협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시설물에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 규칙 제19조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등 또는 손괴가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2단계 이상 상향되

거나 하향된 경우

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D, E등급에서 상향된 경우

마.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부실로 통보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한국시설안전공단·관리주체(이하 “점검·진단실시자”라 한다)가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결과(부실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향후 1년간에 한 하며, 실시시기는 용역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시설물의 주요부재에 대한 결함·손상이 발생되었거나 노후 또는 관리 소홀로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협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인 경우

나. 완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거나 하향된 경우

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D, E등급에서 상향된 경우

마.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부적정(“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통보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한국시설안전공단·관리주체(이하 “점검·진단실시자”라 한다)가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부적정으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향후 1년간에 한정하며, 실시시기는 용역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시설물의 주요부재에 대한 결함·손상이 발생되었거나 노후 또는 관리 소홀로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협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안전등급

한 결과 안전등급이 C등급  
인 경우

3. 민간관리주체를 지도·감독하  
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밀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부실 점검  
·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4. 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의 100분의 70  
미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관리주체,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정밀안전점검  
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  
로써 부실 점검·진단의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3종시설물에 대하여 법 제12  
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을 실시하는 경우
  -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 진흥  
법」 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제6조(기술자문위원회)에 따  
라 기술심의 및 기술자문을 거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아

이 D등급 이하인 경우

- 나. 완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한 결과 안전등급이 C등급  
인 경우
3. 민간관리주체를 지도·감독하  
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밀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부실 점검  
·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4. 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의 100분의 70  
미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을 위반한 관리주체, 한국시설  
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가 정밀안전점검  
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  
로써 부실 점검·진단의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3종시설물에 대하여 법 제12  
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을 실시하는 경우

니한다.

제64조(평가의 실시 등) ①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제63조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확인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하여는 규칙 별표 6에 따른 해당분야 특급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하여 자문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급기술자 2명이 평가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평가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진단실시자 등에게 현장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 시 신기술·신공법 등에 의한 특수시설물 등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제64조(평가의 실시 등) ① -----

-----  
-----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 해당  
직무분야 -----

-----  
-----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

② -----  
-----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는 자(이하  
“평가자”라 한다)를 2명 이상으  
로 -----.

③ 평가자는 평가업무-----  
----- 현장에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가 사실에 근거하여 작  
성되었는지를 확인(이하 “사실관  
계조사”라 한다)을 --- 사실관계  
조사를 -----.

④ ----- 정밀안전진  
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  
-----

수 있다.

⑤ 평가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르며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정밀안전진단결과(정밀안전점검결과는 60점 미만)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상으로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은 각각 다음 각 호에 따르며,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따른다.

1. 정밀안전점검 평가항목 및 배점

가. 점검계획수립 및 보고서체

계의 적정성 : 5점

나. 자료조사·분석의 적정성 :

10점

다.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

정성 : 20점

라. 현장 비파괴시험, 재료시험

등 각종 시험·분석의 적정

성 : 15점

마. 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

인 추정의 적정성 : 15점

바. 평가결과의 적정성 : 20점

사. 종합결론의 적정성 : 15점

2. 정밀안전진단 평가항목 및 배점

가. 진단계획수립 및 보고서체

계의 적정성 : 5점

나. 자료조사·분석의 적정성 :

10점

다.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

<신 설>

정성 : 15점

라. 현장 비파괴시험, 재료시험  
등 각종 시험·분석의 적정  
성 : 10점

마. 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 15점

바. 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  
인 추정의 적정성 : 10점

사. 평가결과의 적정성 : 15점

아. 보수·보강 방법의 적정성  
: 10점

자. 종합결론의 적정성 : 10점

⑥ 제5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점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  
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평  
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상으로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대  
한 평가점수의 총점이 60점 미  
만이거나 평가항목 중 제5항제  
1호다목 또는 바목(이하 “정밀  
안전점검 중요평가항목”이라  
한다)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100  
분의 40이하인 경우

2.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

⑥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정밀안전 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작성된 계약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등에 따른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당해 관리주체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받아 그 사유 등을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생략)

⑦ (생략)

제66조(평가의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는 법 제21조에 따라 본 지침과 세부지침 및 과업지시서, 과업수행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67조(평가세부사항)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평가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 평가점수의 총점이 70점 미만이거나 평가항목 중 제5항제2호다목, 마목 또는 사목(이하 “정밀안전진단 중요평가항목”이라 한다)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100분의 40이하인 경우

⑦ 제5항에 따라 평가-----  
 -----  
 -----  
 -----  
 -----  
 -----  
 -----  
 -----  
 -----  
 -----  
 -----  
 -----  
 -----

1.·2. (현행과 같음)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66조(평가의 기준) -----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  
 -----  
 -----

<삭 제>

포함하여야 한다.

1. 영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평가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세부사항

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  
전진단계획 수립 및 보고서  
체계의 적정성

나. 설계도서 및 유지관리 관련  
등 자료조사의 적정성

다.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  
정성

라. 현장시험의 선정·실시 및  
시험결과의 분석·평가 등  
의 적정성

마. 구조해석 조건 및 결과의  
분석 등 안전성 검토의 적정  
성(정밀안전점검결과는 과  
업지시서에 의해 수행된 경  
우에 한한다)

바.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  
보강 제시방안의 적정성

사. 손상·결함에 대한 원인추  
정 및 조치의 적정성

아. 주요부재별, 단위구조별,  
시설물 전체에 대한 평가 및  
안전등급지정의 적정성

자. 종합결론의 적정성 등

2.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평가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세부사항

가. 보수·보강방법 및 현장 적용의 적정성

나.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방안 제시 및 실용성 여부 등

3. 영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8조(평가결과 사전 통보 등) ①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제64조에 따라 평가를 한 결과 평가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평가 사전통보서를 점검·진단실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검·진단실시자는 평가위원회 심의 시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69조(평가위원회의 심의 요청)

① 제64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평가한

제68조(평가결과 사전 통보 등) ①

-----  
-----  
-----  
-----  
점검·진단실시자(공동으로 도급 받아 수행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도급 받은 자 모두를 말한다)---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이 경우 한국시설 안전공단은 점검·진단실시자에게 참석하도록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평가위원회의 심의 요청)

① -----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결과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 및 이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의요청서를 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8조제2항에 따라 소명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0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평가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 4. (생략)

-----  
-----  
-----  
--.

② -----  
----- 정밀안  
전진단 실시결-----  
-----  
-----  
-----  
-----  
-----  
-----.

제70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삭제>

② -----  
----- 한국시설안전  
공단 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한국시  
설안전공단 이사장이 임명한다.  
-----.

1. ~ 4.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자 할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이 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 건설관련법령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제73조(소위원회 구성·운영 등)

- ① ~ ③ (생략)
-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설물 분야별 전문가로 소위원회 위원(이하 “소위원”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 ⑤ 소위원장은 소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한다.

<신설>

제74조(평가위원회 심의 등) ① (생략)

- ②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당해 평가업무를 수행한 관계자 등에게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생략)
- ④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제2항에

④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은 제2항제2호

1. (현행과 같음)
2. -----,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73조(소위원회 구성·운영 등)

-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

<후단 삭제>

⑤ 소위원장은 소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한다.

제74조(평가위원회 심의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 사실관계조사

- ③ (현행과 같음)
- ④ -----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및 경비 등의 업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결과를 심의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간사를 외부 전문가로 선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75조(심의점수 산정) <신 설>

① 평가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심의서(이하 “심의서”라 한다)를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들이 제출한 심의서의 심의점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계상하고 심의점수 중 최상위 및 최하위의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

----- 사실관계  
조사-----

⑤ -----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

제75조(심의점수 산정) ①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심의할 경우에는 심의항목 및 배점은 제64조제5항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을, 중요심의항목은 제64조제6항의 중요평가항목을 준용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심의-----  
-- “심의위원”-----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③ 심의위원들-----  
-----  
-----  
-----  
-----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가 심의점수로 결정하되 심의점수 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③ 평가위원이 심의의결시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제출된 심의서 내용을 심의의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6조(심의의결 등) ① 평가위원회는 당해 심의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심의에 참여한 평가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심의서가 위원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평가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평가위원회가 심의대상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하여 의결을 할 때에는 심의서에 의하여 산정된 심의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적정, 시정 또는 부실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적정 : 당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평가결과에서 심의점수가 70점(정밀안전점검 결과는 60점) 이상인 경우

-----  
-----.

④ 심의위원-----  
-----  
-----  
-----.

제76조(심의의결 등) ① -----  
----- 심의위원의 -----  
----- 심의위원 과반수-----.

제75조제4항-----  
-----  
심의위원-----  
-----.

② -----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1. -----  
----- 심의결과에서 심의점수의 총점이 70점(정밀안전점검 심의결과는 60점) 이

2. 시정 : 당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일부 미비점 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의점수가 60점~69점(정밀안전점검결과는 50~59점)인 경우

3. 부실 : 당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고의 또는 과실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의점수가 60점(정밀안전점검결과는 50점)미만인 경우

<신 설>

상이고,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없는 ---

2. 미흡 -----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심의  
결과에서 심의점수의 총점이 65점~69점(정밀안전점검 심의결과는 55~59점)이거나,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1개---

3. 불량 -----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  
-----  
---- 있어 실시결과가 일부 불량하다고 ----- 심의결과에서 심의점수 총점이 60점~64점(정밀안전점검결과는 50점~54점)이거나,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배점의 100분의 40이하인 항목이 2개 미만-  
--

4. 매우 불량 : 당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고의 또는 과실 등이 있어 실시결과가 전반적으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의

결과에서 심의점수 총점이 60 점(정밀안전점검 심의결과는 50점) 미만이거나,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3개 이상인 경우

③ 평가위원회가 제2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의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지적내용(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 제69조제2항-----  
-----  
-----  
-----  
-----

제78조(평가결과 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  
후 영 제14조에5항에 따라 ----  
-----  
-----  
-----  
-----  
-----  
-----  
-----  
-----  
-----  
-----. 이 경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③ 평가위원회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시정” 또는 “부실”로 의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지적내용(시정 또는 부실내용)과 시정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회가 제6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심의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8조(평가결과 보고 등) ① (생략)

②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결과를 검토한 후 해당시설물 관리주체와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점검·진단기관”이라 한다) 및 시도·감독기관(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후단 신설>

③ ~ ⑤ (생략)

⑥ 재평가는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재심은 제74조부터 내지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제4항에 따라 재평가 요청을 받는 경우 재평가 심의위원회는 평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당초의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 제외)이 과반수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⑧ (생략)

제79조(비밀의 엄수) 평가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임원·직원 등을 포함한 평가업무 관계자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제4항에 따라 평가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등도 또한 같다.

제81조(서류의 보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공동으로 도급 받아 수행한 점검·진단기관에게는 각각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제74조부터 -----  
-----.

⑦ ----- 제5항-----  
-----  
----- 위원장-----  
-----  
----- 심의에 참석한 심의위원-----  
-- 심의위원 제외-----  
-----.

⑧ (현행과 같음)

제79조(비밀의 엄수) 심의위원-----  
-----  
-----  
-----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

제81조(서류의 보존) -----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와 관련되는 서류(관련자료를 포함한다)는 평가완료 보고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2조(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1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가 “부실”로 평가된 점검·진단기관에 대하여는 법 제67조제2항제3호를 적용하고, 영업정지를 명하는 기준은 영 제25조에 따른다.

② 관리주체에서 직접 실시한 정밀안전점검결과가 “부실”로 평가된 경우 해당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법 제67조제2항제3호를 적용한다.

③ 제7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시정” 또는 “부실”로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그 지적내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  
-----.

제82조(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①

-----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가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  
-----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  
-----.

② -----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가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

③ 제7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통보받은 관리주체 및 점검·진단기관은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지적내용에 대한 보완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관리주체(점검·진단기관에 한정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가 정밀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지적내용에 대한 보완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 점검·진단기관에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점검·진단기관에 대하여 지적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보완을 요청받은 점검·진단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당 점검·진단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 및 점검·진단기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결과를 보고한 후에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시정기간 이내에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④ 관리주체 및 점검·진단기관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결과를 보고한 후에 지적내용에 대한 보완을 완료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시정기간 이내에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⑥ 관리주체가 점검·진단기관에  
게 시정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을 아니할  
경우 관리주체는 해당 점검·진  
단기관을 지도·감독하는 행정기  
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야 한다.

⑦ 관리주체 또는 점검·진단기  
관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  
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  
정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이행을 권  
고하고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  
한 것 이외에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업  
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  
항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4조(교육훈련 과정 등) ① ~ ③  
(생략)

④ 규칙 제10조에 따른 보수교육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

1. (생략)
2.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보수  
교육 : 교량 및 터널반, 수리시

<삭 제>

⑤ -----  
-- 제3항 및 제4항-----  
-----  
-----  
-----  
-----  
-----  
-----  
-----  
-----  
-----  
-----  
-----

제83조(운영세칙) -----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

제84조(교육훈련 과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1. (현행과 같음)
2. ----- 성능평가 -----  
-----

설반, 향만반, 건축반

제86조(교육훈련 대상자) 교육기관  
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또는 정  
밀안전진단 기술자의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  
상으로 한다.

1. ~ 5. (생략)

제87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제  
출) ① 제84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과정을 개설  
· 시행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해 실시할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신설>

제89조(기술자 교육과정) ① 시설  
물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의  
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제86조(교육훈련 대상자) -----  
----- 안전점검등 및 성  
능평가 -----  
-----  
-----.

1. ~ 5. (현행과 같음)

제87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제  
출) ①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  
-----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  
라 제출받은 교육훈련계획을 검  
토하여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게 수  
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  
받은 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9조(기술자 교육과정) ① -----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  
-----  
-----.

1. -----

하는 책임기술자 : 정기안전점검 과정 및 해당 분야의 보수교육 과정

2.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책임기술자 : 정밀안전점검 과정과 해당 분야의 보수교육 과정

3.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 정밀안전진단 과정과 해당 분야의 보수교육 과정

4. 성능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 성능평가 과정 및 해당 분야의 보수교육 과정

② (생략)

③ 정밀안전점검 과정의 토목반, 건축반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각각 정기안전점검 과정의 토목반, 건축반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 (생략)

제91조(교육기간)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가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해당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과정 및 -----  
-----

2. -----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과정 및 -----  
-----

3. -----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과정 및 -----

4. -----  
----- 해당 분야의 성능평가 과정 및 -----  
-----

② (현행과 같음)

③ 정밀안전점검 과정의 토목반, 건축반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각각 정기안전점검 과정의 토목반, 건축반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1. 정기안전점검 과정 : 35시간
2.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과정 : 70시간
3. 성능평가 과정 : 14시간
4. 보수교육 과정
  - 가. 정기안전점검 : 7시간
  - 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14시간
  - 다. 성능평가 : 7시간

제94조(수료) ① 교육기관의 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수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95조(강사요원 선임 등) 교육기관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과정의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교육훈련 강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97조(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점검등 기술자의 기술력 향상과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교육내용 및 교육효과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평가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94조(수료) ① -----  
----- 자에게  
는 별지 제13호식에 따른 -----.

② (현행과 같음)

제95조(강사요원 선임 등) -----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  
-----  
-----  
-----  
-----.

1. ~ 5. (현행과 같음)

제97조(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

①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  
-----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훈련의 과정과 교과목 내용 등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데 효과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생략)

제9장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제98조(지정 대상)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8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는 별표 31과 같다.

제99조(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 하는 민간 시설물) 영 제3조 제2항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는 민간 시설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과 같다.

1. ~ 3. (생략)

제100조(실태조사) ① 지정기관은 제98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지

④ -----  
-----  
----- 안  
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  
-----  
-----  
-----.

⑤ (현행과 같음)

제9장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등

<삭 제>

제99조(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 하는 민간 시설물) 영 제3조 제2항-----  
-----  
-----  
-----  
-----  
-----  
-----.

1. ~ 3. (현행과 같음)

제100조(실태조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

정을 위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별표 31에 해당하는 소관 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현황, 안전상태, 적정한 안전관리 시행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실태조사의 절차는 별표 32와 같다.

③·④ (생략)

⑤ 지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조사하는 경우 영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의 방법에 따라 이를 시행한다.

<신 설>

⑥ 지정기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고시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은 --- 영 별표 1의2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범위-----  
-----  
----- 지정된 시설이거나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려는 -----.

② 실태조사의 절차는 별표 32와 같으며, 그 외 실태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하는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을 따른다.

③·④ (현행과 같음)

<삭 제>

⑥ 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안전상태 등 실태조사 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www.fms.go.kr](http://www.fms.go.kr))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 -----



경우 인·허가대장, 「도로법」 제59조에 따른 도로교량 및 터널 현황 정보시스템(<http://bti.kict.re.kr>), 「국정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e-나라지표([www.index.go.kr](http://www.index.go.kr)),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건축행정정보시스템([www.eais.go.kr](http://www.eais.go.kr)),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www.fms.or.kr](http://www.fms.or.kr)) 등을 통해 조사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1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① 지정기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시설의 안전등급, 공중에 미치는 위험도(사용인원, 세대수 등), 시설물의 경과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계속적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지정기관은 제3종시설물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시설명, 시설물구분(건축물, 시설물), 시설물유형(교량, 터널 등)

-----  
----- 도로 교량 -----  
현황정보시스템(<http://bti.kict.re.kr>), 「국정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  
----- 건축행정시스템-----  
-----  
-----  
-----  
-----  
-----  
-----  
-----  
-----  
-----

제101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① -----  
----- 결과 등을 -----  
----- 안전상태-----  
-----  
-----  
-----  
-----  
-----  
-----  
-----  
-----  
-----  
-----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

1. 시설물명, 시설물 구분(토목시설물, 건축물), 시설물 종류(교량, 터널 등)

2. (생략)
3. 준공연도, 지정일자, 안전등급
4. 소유주체(공공시설, 민간시설),  
유지관리주체, 도로명 상세주소

5. (생략)

제103조(제3종시설물의 해제) ①  
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3종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등급, 공중에 미치는 위험도(사용인원, 세대수 등), 시설물의 경과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생략)
2.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별표 31에 따른 지정대상(기타시설물 제외)에서 제외되거나 사용인원이 대폭 감소하게 된 경우
3. 4. (생략)
- ② ~ ⑤ (생략)

2. (현행과 같음)
3. ----- 안전상태
4. -----  
- 관리주체-----  
--

5. (현행과 같음)

제103조(제3종시설물의 해제) ①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영 별표1  
의2 제3종시설물의 범위-----  
-----  
-----
3. 4. (현행과 같음)
- ② ~ ⑤ (현행과 같음)